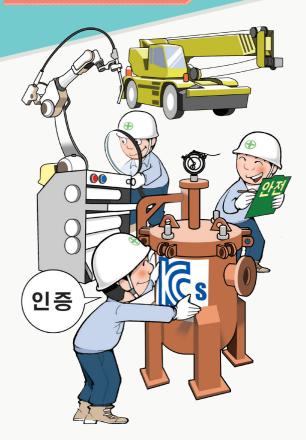
안전인증 완전 정복 가이드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 확보 안전인증으로 해결하세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안내







1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포함)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기구 등에는 №s마크를 표시



▼ 안전인증 심사종류 및 내용

서면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만 해당하며, 개별제품심사 대상기계는 제외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개별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모두에 대하여 각 개별 제품마다 하는 심사

-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제외),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제외), 압력용기, 곤돌라(좌석식 곤돌라제외)

형식별 제품심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심사

- 프레스,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만 해당], 롤러기, 리프트[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만 해당],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기계톱, 곤돌라 [좌석식 곤돌라만해당]

확인심사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사

- ※ 제조자가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등만 해당
- ※ **확인심사주기**: 매 1년 마다 (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2년에 1회 실시 가능)





안전인증(법 제 34조)

자율안전확인신고(법 제35조)

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시험 및 성능 확인 ----- 제조자(수입자) 또는 시험기관
▼
자율안전확인 신고 ----- 제조자 ▶ 신고수리기관
▼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 신고수리기관 ▶ 제조자(수입자)

처리기간

구분		처리기간	
	서면심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안전인증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2220	제품심사	개별 제품심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세품검시	형식별 제품심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자율안전확인신고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2 대상 및 적용범위



※ 안전인증

대상	적용범위
프레스/전단기 /절곡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 [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	적재하증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증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게이지 압력으로 0.2MPa (2kgf/㎡)을 초과한 경우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관(管)을 이용하는 경우호칭지름 150A) 이하인 것은 제외
롤러기	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 수지를 소성변형 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접근할수없는 밀폐형 구조로된 롤러기 는 제외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 (차량 탑재용 포함)
곤돌라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 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기계톱	원동기로 체인형태의 절삭날을 가진 톱을 구동 시켜 벌목, 가지치기 등 목재를 가공하는 휴대용 동력톱 다만, 가지치기전용의 막대형 기계톱 pole sawl은 제외



대상	적용범위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	통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식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 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끽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산업용 로봇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매니플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트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 능한 고정식 로봇
혼합기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것
파쇄기 또는 분쇄기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식품용 및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
식품가공용기계 파쇄,절단,혼합, 제면기	식품파쇄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식품철단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제면기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컨베이어	재료·반제품·화물·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틀어 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팅기	선반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기공하는 공작기계 드릴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 가공을 하는 공작기계 평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 공구를 수평 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기공하는 공작기계 형삭기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랩(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주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밀링기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고정용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등근통기계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기계대패 공작물을 이승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루타기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찰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때롭기계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앤드레스형 따통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모때기기계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불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인쇄기	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 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기압조절실 chamber	수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



3 안전인증 수수료 및 제출서류



[단위:원]

Oha	안전 인증대상		안전 인증 종류별 수수 료						
고선 진동대성		서면심사		제품심사					
		천장,	적격하중			적격하중			
			10톤 미만	172	,000	10톤 미만	66,000		
			50톤 미만	193	,000	50톤 미만	71,000		
			100톤 미만	215	,000	100톤 미만	75,1	000	
		갠트리				200톤 이하	79,000		
			100톤			500톤 이하	101,000		
			이상	236,000		500톤 초과	101,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101,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 을 초과할 수 없다.		
		-014				적격하중			
	IOI	호이스		129,000		5톤 미만	58,1	000	
크러	민					5톤 이상	62,000		
			적격하중			적격하중			
			50톤 미만	215	.000	10톤 미만	101,000		
		타워, 지브,				50톤 미만	107,		
		시브, 기타				100톤 미만	116,		
		- 1-1	50톤 이상	280	,000	100톤 초과	116,000원에 100톤을 초과한 100톤마다 116,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 을 초과할 수 없다.		
			적격하중			적격하중			
		언로	30톤 미만	323	,000	30톤 미만	168,000		
		우더	30톤 미만	430	.000	50톤 미만 50톤 이상	216,		
							259,000		
리프	ΞĒ,	곤돌라		107,000			53,000		
			내용적	갑종	을종	내용적	갑종	을종 4 / 000	
			5㎡ 미만	172,000	86,000	2㎡ 미만	34,000	16,000	
			00 1 = 1 = 1	193.000	107.000	5㎡ 미만	43,000	19,000	
			30㎡ 미만	193,000	107,000	30㎡ 미만 40㎡ 이하	64,000 77,000	24,000 32,000	
	압력	용기		215,000	129,000	100m² 01aF	82,000	38.000	
			30㎡ 이상			100㎡ 초과	82,000원에 100㎡ 를 초과한 100㎡마다 82,000원을 가산한 금 액. 다만, 500,000원 을 초과할 수 없다.	38,000원에 100㎡를 초과한 100㎡마다 38,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압력능력			압력능력			
			200톤	1/0	000	50톤 미만	34,000		
			미만	140,000		200톤 이하	43,000		
		전단기 곡기				300톤 이하	51,000		
3	× 2	7/1	200톤 이상			500톤 이하	62,000		
						500톤 초과	62,000원에 500톤을 초과한 500톤마다 62,000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롤러기			140,000			49,000		
			형체결력			형체결력			
			2,942kN 미만 37 l	140,000		294kN 미만	34,1	000	
,	l출	성형기				2,942kN 미만	43,000		
						5,884kN 이하	51,1		
			이상			5,884kN 초과	51,000원에 5,884kN 마다 51,000원을 가산 다만, 500,000원을 초	한 금액,	
7	고소작업대			107,000			53,000		
	기가	톱		240,000		500,000			



국내 제조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

-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대상품에 따른 안전인증 종류별 수수료 + 출장비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125,000원 + 출장비
- 확인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수수료(출장비 제외)의 50% + 제품심사 수수료 + 출장비
- ※ 출장비(10,000/사업장)

국외 제조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 등

- 대상품에 따른 제품심사 수수료 + 기본수수료[480,000원] × 심사일 수 × 심사원 수 + 출장비
- ※ 출장비(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기준 이내)
- ※ 심사일수

구분	1~2품목	3~5품목	6품목 이상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확인심사		2일	
제품심사	1일	2일	3일

^{*}이동일이 2일 이상인 경우 심사일 수는 이동일수의 1/2을 가산

※ 기본수수료는 '14년부터 매년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의 중급기술자 노임단가 인상률을 반영

안전인증의 변경 수수료

안전인증 수수료에 따른 심사 종류별 수수료

안전인증서 발급 수수료

안전인증서 재발급·추가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제출서류

	심사종류	구비서류
01-	서면심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입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해당한다)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제조자가 국내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기계ㆍ기구 및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기계ㆍ기구 및설비에 포함된 부품ㆍ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만해당) -기계.기구 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 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유·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도면
안전 인 증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신청서 다음 각목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공정생산관리 및 제품출하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설비관리 및 시험검사장비의 관리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절차 고객 불만처리 및 사후관리 절차
	제품심사	신청서 서면심사결과 통지서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 통지서(형식별제품심사시) 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격하중 10톤 이상]
자	률안전확인신 고	신고서 제품의 설명서 자율인전확인대상기계·기구 등의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위험성평가 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결과서(또는 자체시험·검사 결과서)

4 관련법규 및 벌칙 등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부터 제34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부터 제58조의8까지)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13-13호)
-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33호)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부터 제35조의4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13-13호)
-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 (고용노동부고시제2012-46호)

수수료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40호)



벌칙

주요위반내용	벌칙	관련근거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자율안전 확인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瞳 안전인증 업무수행 기관 및 범위

업무수행기관	업무수행범위	대표전화
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1544.3089
대한산업안전협회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02.860.7073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안전인증(크레인, 리프트, 고소작업대)	1577.4910



5 미인증제품 수입통관 제재사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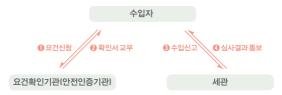
프레스/전단기 등 일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를 미인증 수입시 관할세관으로부터 수입신고서 보완요구 또는 통관보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제품 수입자(화주)께서는 반드시 수입신고 전에 안전인증을 받은 후 수입품 안전인증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세관장 확인대상 주요 안전인증 대상품 현황

안전인증 대상제품	HSK 코드 품목수
총 계	30개
프레스 / 전단기	8개
고소작업대 / 크레인 [이동식]	6개
사출성형기	5개
방폭전기 기계·기구	11개

수입통관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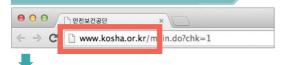


- 수입자 안전인증기관에 요건신청 ▶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 신청서〉 안전인증기관 제출
- ② 안전인증기관 확인신청서 접수·검토[7일 이내] ▶ 〈수입품 안전 인증 확인서〉 교부
- ③ 수입자 〈수입품 안전인증 확인서〉등 첨부 ▶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
- 4 세관 수입심사 ▶ 수입자에게 심사결과 통보



6 위험기계기구 정보검색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www.kosha.or.kr



사업안내/신청



전문기술총괄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자료실

2015 - 전문기술총괄실 - 107

산하기관별 관할지역 및 연락처

※ 대표전화: 1544-3089

	※ 대표선화: 1544-3089
서울지역본부	(우)150-98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영등포동 2개 7층 전문기술위원실 Tel 02.6711.2946, 2944, 2943 Fax 02.6711.2949 •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관할지역 서울특별시, 강원되철원군제외, 경기도 가평군
부산지역본부	(우)609-817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63번길 26 [부곡동 64-31] Tel 051.520.0570,0670 Fax 051.520.0579 *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관활지역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지역본부	(우)700-732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48 (동인동 2가 50-3) 호수빌딩 19, 20층 Tel 053.609.0587, 0586 Fax 053.421.8627 •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울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관활지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중부지역본부	[우]403-711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 (구산동) Tel 032.5100.527(1팀) Fax 032.578.9202 Tel 032.5100.566(2팀) Fax 032.579.8192 *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관활지역 1팀·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경기도의 한강이북지역 (가평군 제외), 강원도 철원군 2팀-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오산시, 용인시, 안성시, 화성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경기도 여주군, 광주시, 이천시, 하남시,양평군, 성남시
광주지역본부	(위)506-721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우산동 1589-1) 광주무역회관빌딩 9층 Tel 062,949.8783, 8784 Fax 062.949.8768 •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울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관활지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도
대전지역본부	(우)305-380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339번길 601문지동 104-7) 3층 Tel 042.620.5643, 5644 Fax 042.632.3619 • 담당업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 관할지역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